

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조례 폐지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10년 11월 12일

○ 회부일자 : 2010년 11월 18일

3. 제안이유

- 조례의 상위법령인 「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」이 폐지(2008.3.28)됨에 따라 「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함

4. 주요골자

- 「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조례」 폐지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조례 폐지조례안을 검토한바
- 조례의 상위법령인 「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」이 폐지(2008.3.28)됨에 따라 「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

※ 부산, 대구, 광주, 대전, 울산, 경기, 강원, 경북 등 8개시도 폐지